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360

발의연월일: 2025. 2. 21.

발 의 자:이용우・박지원・이수진

이재관 • 한준호 • 김문수

박해철 · 김영환 · 최민희

김주영 · 이학영 · 이광희

신장식 • 박홍배 • 임미애

김태선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실정임. 이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이미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나, 실제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보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저조한 상황임.

이에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

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하고,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가산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명시해 장애인 고용 촉진에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3조제3항).

법률 제 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0"을 "80"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최저임금액"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부담금 기초액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에 대한 고용부 담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 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	③
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	
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	<u>80</u>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	
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	
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	
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	
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	
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	
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	
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u>최저임금액</u> 으로 한다.	<u>최저임금액 이상</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① (생 략)	④ ~ ① (현행과 같음)